##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40

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민병덕·신영대·김 윤

김남희 · 김병기 · 황명선

장철민 • 이해민 • 김재원

한창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업시설·비품, 거래처, 영업상의 노하우,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·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거나 국·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.

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 및 그 회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5제2호).

법률 제 호

###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5제2호 중 "공유재산"을 "공유재산(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권리금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5(권리금 적용 제외) 제1	제10조의5(권리금 적용 제외)
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	
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	
니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	2
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른 국유	
재산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	
품 관리법」에 따른 <u>공유재산</u>	<u>공유재산</u>
인 경우	(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제
	외한다)